

Samil Commentary

January 15, 2019

201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2018년 12월 8일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임.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 8일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.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시행령 개정안은 2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12일 정도에 공포될 예정임.

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[법인세법](#)

[소득세법](#)

[조세특례제한법](#)

[부가세법](#)

[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](#)

[관세법](#)

법인세법

●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 차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익금불산입액 = (수입배당금 - 차입금이자) × 익금불산입율 ○ 차입금이자 = 지급이자 × (출자주식 적수/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) 400만원, 미등록자 20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제외



pwc

삼일회계법인

<개정이유>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을 합리화함.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●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추가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, 미수금, 어음, 수표 등 ○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<p>< 추가 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범위 조정 (좌 동) <p>< 삭제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
<개정이유>

(채권회수의무 면제 채권) 「외국환거래법」상 채권 회수명령 규정이 삭제된 점을 감안 (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채권)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된 분부터 적용

● 적격 물적분할·현물출자 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적격 물적분할·현물출자 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·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할·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감가상각 기준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가 → 분할·출자법인의 장부가액

<개정이유>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물적분할·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법

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및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 신설

현행	개정안
<p>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* 업종(64개)</p> <p>*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가 ></p> ○ 골프장 운영업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추가 ></p> 	<p>□ 의무발급 업종 확대</p> <p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컴퓨터 학원, 마용학원, 요리학원, 자동차정비학원 등, 속기학원, 속독학원, 응변학원 등 <p>(좌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, 가전제품 소매업, 묘지 분양 및 관리업, 장의 차량 운영 및 임대 등

<개정이유> 소비자 거래 빈도가 높거나 수입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을 현금영수증

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현행	개정안
<p>< 신설 ></p>	<p>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 ○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 따른 보험금 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대지급금

<개정이유>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를 제외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

● 비거주자,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

현행	개정안
<p>□ 비거주자,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*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내파생상품 <p>< 추가 ></p>	<p>□ 제외되는 파생상품 추가 및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

*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
기타소득: 자산 수증 소득, 국내
자산,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및 경제적
이익 등(세율 20%)

<개정이유>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
불확실성 해소

조세특례제한법

●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비 명확화·합리화

현행	개정안
<p>□ R&D에서 제외되는 활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조사, 관리·지원활동 등 <p><추가></p> <p>□ R&D비용의 인정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담부서 견본품·부품·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등 <p><추가></p>	<p>□ R&D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동) ○ 콘텐츠·시스템 등 제작에 관련된 활동 <p>□ 콘텐츠(이미지·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) 산업에 적용 가능토록 R&D비용 중 재료비 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동) <p>- 전담부서의 체·음원·이미지·창작용 S/W 등 대여·구입비</p>

<개정이유> 콘텐츠 관련 R&D비용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,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
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서체·음원 등 재료비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● 신성장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요건완화

현행	개정안
<p>□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중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신성장 R&D 전담부서 등 연구인력 인건비 - 일반 R&D 전담부서 등으로서 신성장 관련 별도조직 운영시 별도조직 	<p>□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인정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동) - (좌동)

연구인력 인건비

< 추가 >

- 견본품, 원재료비 등

- 일반R&D와 신성장R&D에 공통되는 경우 **일반R&D**

- 일반R&D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분야

전담 연구인력 인건비

- 견본품, 원재료비 등 요건완화

- 일반R&D와 신성장R&D에 공통되는 경우

**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(구체적
안분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)**

<개정이유> 신성장 R&D비용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 R&D 전담부서 요건 등을 완화

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● R&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

현행	개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관련 서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액공제 신청서, R&D비용 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<p>< 신설 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R&D활동 검증자료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p>< 신설 ></p>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계획서·보고서(전체 R&D), 연구노트(신성장R&D) 등 작성·보관 (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비용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계획서·보고서 함께 제출
	<개정이유> R&D비용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&D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강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● 국세청의 R&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

현행	개정안
< 신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세청의 R&D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심의 대상) 일반·신성장 R&D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○(운영 방법)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함

<개정이유> 기업들의 R&D비용 세액공제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●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

현행	개정안

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

-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
 - 퇴직금, 퇴직급여충당금
 - 법인령 §20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 등

인건비 범위 조정

-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
 - 퇴직금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보험료
- < 삭제 >

<개정이유>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

●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

현행	개정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성장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1대분야 157개 기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53개 기술 -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등 기술 - 메모리 반도체 소재 등 기술 - 5G 게이트웨이, 라우터 등 기술 - 극한성능 탄소섬유 제조기술 <p>< 추가 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성장기술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개 기술의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추가 -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추가 - 5G 스위치 기술 추가 -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 추가 ○ 16개 기술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기차용 초고속·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, 블록체인 기술, 양자 컴퓨터 기술,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

<개정이유>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신기술 범위 확대

<적용시기> '19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●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

현행	개정안
<p>< 신설 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용 고정자산(법인령§28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 및 장치, 공구, 기구, 비품 - 차량 및 운반구, 선박 및 항공기(운수업·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) ○ 혁신성장 투자자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·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(조특법 제11조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(조특법 제25조의5)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산입 방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준내용연수의 100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
<개정이유>	기업 투자활성화 유도
<적용시기>	'18.7.1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부가가치세법

●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

법개정 내용

-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*에 '클라우드 컴퓨팅, 광고, 중개용역' 추가 (중개용역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)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사업자가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 (단, 재화, 용역의 공급대가에 중개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국내사업자,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, 납부하는 경우 제외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내에서 물품,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, 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○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

<개정이유> 국내, 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

<적용시기> '19.7.1.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
●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 마련

현행	개정안
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가격산출방법 결정에 관한 원칙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, 이익분할방법, 가치평가방법(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) 우선 적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가치평가방법 사용 시 현금흐름 예상액, 성장률, 할인율,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에 대한 합리적 가정 필요<input type="checkbox"/> 무형자산의 수익 귀속에 관한 원칙

- 무형자산의 개발, 향상, 유지, 보호 및 활용 등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업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적절한 보상
-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만으로 무형자산의 개발, 향상, 유지, 보호 및 활용 등 수행한 기능에 비추어 과도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됨

<개정이유>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의 개발, 향상, 유지, 보호, 활용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 원칙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명확화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●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(Hard-To-Value Intangible)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

현행	개정안
< 신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정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해당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음○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원칙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후에 평가된 정상가격이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·조정○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 평가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을 적용하지 않음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납세자가 해당 무형자산의 거래가격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- 사후 평가된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거래가격의 20%를 넘지 않는 경우- 해당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서 과세당국간 합의에 따라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경우

<개정이유>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경우 사후평가를 바탕으로 당초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

관세법

● 체납처분 유예절차 등 신설

법개정 내용

□ 관세 체납처분 유예제도 신설

-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, 유예한 처분의 취소 및 연장 등 가능 (신청절차, 유예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)

현행	개정안
<p>< 신설 ></p> <p>※ 현행은 국세징수법을 준용·운영 중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체납처분 유예 신청절차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체납처분 유예신청서(체납자 인적사항, 체납액, 유예 기간,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포함)를 세관장에 제출○ 납부계획서(납부일정, 납부계획 등) 제출시에는 담보제공 생략 가능○ 유예기간은 2년 이내

<개정이유> 체납처분 유예제도 신설에 따라 신청절차, 유예기간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규정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

●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신설

현행	개정안
<p>< 신설 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 절차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재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 발생 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(HS 협약)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 진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다만, 관세청장이 협의하는 경우 분쟁 발생 사실 및 협의 내용 등을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○ 기재부 장관은 미합의 분쟁 건을 관세협력이사회 (Customs Cooperation Council)에 해결 요청

<개정이유> HS협약의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법제화하여 기업 불편 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

<적용시기>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

Contacts

국제조세	내국세	이전가격 & 국제통상	비영리법인 지원센터
이중현 709-0598 alex.lee@pwc.com	오연관 709-0342 yeon-gwan.oh@pwc.com	이희태 3781-9083 heui-tae.lee@pwc.com	변영선 3781-9684 youngsun.pyun@pwc.com
이상도 709-0288 sang-do.lee@pwc.com	이영신 709-4756 young-sin.lee@pwc.com	헨리 안 3781-2594 henry.an@pwc.com	중소기업 · 스타트업지원센터
김상운 709-0789 sang-woon.kim@pwc.com	김진호 709-0661 jin-ho.kim@pwc.com	전원엽 3781-2599 won-yeob.chon@pwc.com	김봉균 3781-9975 bong-kyoon.kim@pwc.com
김주덕 709-0707 michael.kim@pwc.com	황철진 709-0759 chul-jin.hwang@pwc.com	조정환 709-8895 junghwan.cho@pwc.com	Knowledge & Innovation 조한철 3781-2577 han-chul.cho@pwc.com
이동복 709-4768 dongbok.lee@pwc.com	정복석 709-0914 boksuk.jung@pwc.com	M&A 세무	삼일인포마인
정종만 709-4767 chong-man.chung@pwc.com	남형석 709-0382 hyungsuk.nam@pwc.com	정민수 709-0638 minsoo.jung@pwc.com	송상근 709-0559 sang-keun.song@pwc.com
신현창 709-7904 hyun-chang.shin@pwc.com	남동진 709-0656 dong-jin.nam@pwc.com	최혜원 709-0990 hyewon.choi@pwc.com	피더블유씨 관세법인 이영모 3781-3140 youngmo.lee@pwc.com
조창호 3781-3264 changho.jo@pwc.com	나승도 709-4068 seungdo.na@pwc.com	해외파견 세무 박진아 709-0797 jina.park@pwc.com	
오남교 709-4754 nam-gyo.oh@pwc.com	노영석 709-0877 yongsuk.noh@pwc.com	상속증여 & 주식변동 이현종 709-6459 hyun-jong.lee@pwc.com	
차일규 3781-3173 il-gyu.cha@pwc.com	정선흥 709-0937 sun-heung.jung@pwc.com	금융세무 박태진 709-8833 taejin.park@pwc.com	
김광수 709-4055 kwang-soo.tls.kim@pwc.com	조성욱 709-8184 sung-wook.fs1.cho@pwc.com	정훈 709-3383 hoon.gp6.jung@pwc.com	
김영옥 709-7902 young-ok.kim@pwc.com	신윤섭 709-0906 yoon-sup.shin@pwc.com	박수연 709-4088 soo-yun.park@pwc.com	
로버트브로웰 709-8896 robert.bowell@pwc.com	최유철 3781-9202 yu-chul.choi@pwc.com		

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
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
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보다 상세한 정보는
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

삼일회계법인

©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. All rights reserved